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마속란 의원 발의】



2017.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2호로 2017년 10월 13일 마숙란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원 재산의 출연 등,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다.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라.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청구,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회계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와 감독, 사업실적과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또한, 부칙 안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사무가 연속되도록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개발·보급 등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